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1. 12. 7.)

[2012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노해]

〔 2012년도 거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 일자 : 2011. 11. 16.

나. 제출 자 : 거창군수

다. 회 부 일 자 : 2011. 11. 17.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
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에 의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

3. 2012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운용방침

- 자금 운용체계의 이원화(총괄, 운영부서)로 책임성·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운영부서 : 각 기금관리운용 실·과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1년말 현재액 ㉠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말 현재액 ㉡=㉠+㉢-㉣	증감
		수입 ㉢	지출 ㉣		
8 개	3,906	203	233	3,876	△30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기 금	511	15	18	508	△3
기초생활보장기금	654	49	88	615	△39
생활안정기금	88	40	40	88	0
노인복지기금	1,045	35	34	1,046	1
여성발전기금	1,040	34	30	1,044	4
식품진흥기금	10	11	6	15	5
아름 예술제 진 흥 기 금	502	17	17	502	0
체육진흥기금	54	2	0	56	2

5. 검토의견

■ 주민생활지원실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1년말 현 재 액 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말 현 재 액 ④=①+ ②-③	증감
		수 입 ②	지 출 ③		
5 개	3,338	173	210	3,301	△37
저소득주민자녀 장 학 기 금	511	15	18	508	△3
기초생활보장기금	654	49	88	615	△39
생활안정기금	88	40	40	88	0
노인복지기금	1,045	35	34	1,046	1
여성발전기금	1,040	34	30	1,044	4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p13)

-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이며, 재원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탁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 지원기준은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하고, 2012년도에는 총35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1인당 지원기준은 중학교 일반장학생에

게는 40만원을, 중학교 특별장학생과 고등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각각 60만원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8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액은 511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5백만원, 지출 18백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08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초생활보장 (p17) 및 생활안정기금(p22)

-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서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액은 742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9백만원, 지출 128백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03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및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노인복지기금(p26)

-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200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하였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액은 1,045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5백만원, 지출 34백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46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성발전기금(p30)

-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2002년)으로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액은 1,040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4백만원, 지출 30백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44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원봉사과(p33)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1년말 현재액 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식품진흥기금	10	11	6	15	5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액은 10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백만원, 지출 6백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5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관광과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1년말 현재액 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말 현재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1개	502	17	17	502	0
아름 예술제 진흥기금	502	17	17	502	0

◆ 아람예술제진흥기금(p39)

- 아람예술제진흥기금은 거창군 아람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향토 문화·예술축제인 아람예술제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재원조성 방법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아람예술제 행사인여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매년 아람 예술제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 행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백만원, 지출 17백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02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설관리사업소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1년말 현 재 액 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말 현 재 액 ④=①+ ②-③	증감
		수 입 ②	지 출 ③		
1 개	54	2	17	56	2
체육진흥기금	54	2	0	56	2

◆ 체육진흥기금(p43)

-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주요규정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받아 이 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기금사용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기금 재원조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료, 사용료 수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말 현재액은 54백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백만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 은 56백만원으로 기금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음.

- 당초 기금설치 목적대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 5.30] [법률 제10736호, 2011. 5.30,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에 도달 될 때까지 계속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탁금

3.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 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지급 용도에 사용한다.

제 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내의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액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장학생의 자격) ①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에서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50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특별장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또는 학교 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 관련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장학생중 이미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 9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 지출계획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 10조 (장학생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5.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 수입금
7. 부정수급자에 대한 과년도분 보장비용 징수금

② 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3. 생활안정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 수입금

제 4조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용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

한 자활공동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 분의 20이하)

4.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③ 생활안정기금은 군내의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1.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 5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자활공동체 및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 7천만원, 생활안정기금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7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 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절차)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할 경우 자활공동체는 대표자가,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세대주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용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 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조 (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 생활안정기금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② 용자금 상환의 연장, 용자금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9조 (용자금 대여) ① 군수는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에 대여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 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의 계정을 각각 분리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 13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조 (세입 및 세출) ① 기금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거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 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률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

③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 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군 노인 회보 발간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 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책무) ①군수는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3조 (설치) ①군수는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 14조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 15조 (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4.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 16조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 17조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2008.03.24 조례 제1881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4.)

제 2조 (기금의 조성)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 3. 24.)

1.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 3조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식품위생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광역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8. 3. 24.)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비 지원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3.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4. 식품위생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

제 11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 13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4.)

□ 거창군 아립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립예술제(이하 "아립제"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아립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아립제 행사 잉여금
3. 기타 수입금

② 거창군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거창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계정과목 : 아립제 진흥기금)에 납입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3)

제 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아립제 행사추진
2. 기타 아립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 이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제 6조 (기금운용계획)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아립제위원회로부터 아립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3)

제 9조 (기금지급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아립제위원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아립제위원회에 지급한다.

② 아립제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 출납폐쇄기간후 1월 이내에 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13)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체육회(이하 "체육회"라한다)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및 사용료수입(개정 2008. 1. 14)
4. 기타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 3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체육진흥기금 계좌 설치)에 납입 관리 한다.

② 기금은 관내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방체육 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한다.

제 5조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지원한다.